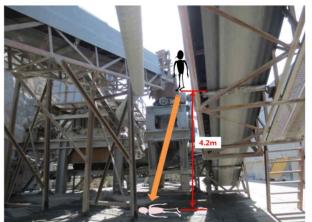
# 벨트컨베이어 수리 도중 바닥으로 떨어짐

### 재 해 개 요

'15. 2월 경북 칠곡군 소재 골재파쇄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벨트 컨베이어 헤드풀리 주변 설비 구조물을 밟고 베어링 교체 작업을 하는 도중 4.2미터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### 재해상황도





기인물(벨트 컨베이어)

재해상황도

# 재해발생상황

- 재해는 롤크라샤 벨트컨베이어 헤드풀리 주변 설비 구조물(높이 4.2미터)에 올라 헤드풀리 베어링을 교체하는 도중 균형을 잃고<sup>\*</sup> 바닥으로 떨어져 발생
- \* 피재자가 베어링 교체를 위해 풀리뽑개를 헤드풀리의 스프라켓에 장착하여 탈착하는 도중 풀리뽑개가 파손되며 몸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 추정

#### ※기인물(벨트컨베이어)

- 제조사 : 미상

- 벨트 : 18.5m,

동력 : 10hp

- 피재자가 밟고 작업한 설비 구조물은 크라샤 감속기 윗면으로 50cm×25cm로 좁은 상태였음
- 벨트컨베이어 주변에는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
- 피재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

# 재해발생 원인

-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(높이 4.2미터)에서 작업발판 설치 등 떨어짐 방지 조치 없이 좁은 구조물에 올라 불안전한 작업자세로 베어링 교체 도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짐
- 안전대와 안전모 등 추락방지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작업을 실시함

###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난간 등 안전조치가 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떨어짐 방지조치를 해야 함
-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함



<작업발판 설치 예시>

# 관련 법규

###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-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·설비·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.
-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  -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- 1.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: 안전모
    - 2.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: 안전대
  -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